

〈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〉

I.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

- 총 3인(사외이사 2인, 사내이사 1인)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됨

- 사외이사 선임 절차

1. 2015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(2015.2.25) :

-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9조에 의거, 사외이사 선임 원칙 및 후보군 관리 기준 확정

2. 2015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(2015.8.21) :

-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원칙에 따라,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확정

3. 후보자 검증 (2018.2.1~2018.2.21) : 사외이사 후보자 수락여부 확인, 자격요건 검증

4. 2018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(2018.2.21) :

- 2017년도 사외이사 평가 실시 보고 :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의 업무수행 능력 검증 후 재선임 추천 시 반영

- 2018년 사외이사 선임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운영 프로세스 보고

-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확정 : 2015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후보군을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후 일부 후보군 제외하고, 분야별 신규 후보군을 추가하여 확정

- 사외이사 후보추천 : 총 4명의 후보 추천 (재선임 후보 3명, 신규 선임 후보 1명)

5.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 (2018.2.21)

- 목적사항 '이사 선임의 건,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'을 포함한 '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' 결의

6. 제32기 정기주주총회 (2018.3.21 예정) : 사외이사 최종 선임 예정

II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 | 2018년 2월 21일 신한카드 회의실 |
| 2. 위원회의 구성 | 총 3명(사외이사 2명, 사내이사 1명) |
| 3. 위원회 위원 | 약력 |
| 박평조 | 現 미마츠기업 대표이사 사장 |
| 성재호 |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|
| 임영진 | 現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|

III. 사외이사후보 관련

1. 박평조

| | |
|---|--|
| 가. 후보자의 인적사항 | |
| ①출생연도 : 1943년 | |
| ②출신학교 : 와세다대학 이공학부 건축학과 | |
| 나. 후보자 경력 | |
| <p>現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前 북해도 한국 청년상공회 회장 前 주식회사 므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前 사회복지법인 미마츠선린회 이사장 前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前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前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(정책기획담당) 前 재일본 대한국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의장 前 신한은행 경영자문위원 前 재일본 대한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前 주식회사 므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前 삿포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</p> | |
| 다. 당사 사외이사 경력 | |
| 근무기간 : 2014년3월31일~현재 | |
| 라. 후보제안자 : 성재호(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) | |
| 1) 인적사항 | 現 성균관대 교수 |
| 2) 후보자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3) 추천 이유 | 일본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,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,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(주)므라오카식품, 미마츠기업등의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|
| 마. 회사등과 관계 | |
| 1)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2) 대주주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3) 임원과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
| 바. 자격충족 여부 | | |
|--|------------|--|
| 심사항목 | 충족여부 | 충족 이유 |
| 1) 소극적 요건 | | |
| 가) 상법 제542조의8제2항 | 충족 | 법령 위반사항 없음 |
| 나) 「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6조 | 충족 | 법령 위반사항 없음 |
| 2) 적극적 요건 | | |
| 가) 당사 정관 제30조 제1항(전문성) | 충족 | 경영 분야 전문가 (現 미마츠기업 사업, 前 무라오카식품 회장 등) |
| 나)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 (직무공정성) | 충족 |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|
| 다) 당사 정관 제30조 제3항 (윤리책임성) | 충족 |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|
| 라) 당사 정관 제30조 제1항(충실성) | 충족 |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|
| 사.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| | |
| 1) 회사등과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 |
| 2) 적극적 요건 충족 | 적극적 요건 충족함 | |
| 3) 현재 겸직 업무 | 겸직사항 없음 | |
| 아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결과 | | |
| 재적위원 3명 중 2명 찬성으로 가결(성재호 위원, 임영진 위원) | | |
| -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, 본인 추천 안건 등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재적위원 불산입 | | |

자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: <별첨>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

차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: <별첨>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

2. 성재호

| | |
|---|---|
| 가. 후보자의 인적사항 | |
| ① 출생연도 : 1960년 | |
| ② 출신학교 :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-석사-박사 | |
| 나. 후보자 경력 | |
| 現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現 제42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前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前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前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前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 前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| |
| 다. 당사 사외이사 경력 | |
| 근무기간 : 2015년3월26일~현재 | |
| 라. 후보제안자 : 박평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) | |
| 1) 인적사항 | 現 미마츠기업 대표이사 사장 |
| 2) 후보자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3) 추천 이유 | 성균관대학교 학생처/입학처/기획조정처 처장,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, 외교부/통일부 정책자문위원, 국제법평론회/한국국제경제법학회/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/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|
| 마. 회사등과 관계 | |
| 1)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2) 대주주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3) 임원과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
| 바. 자격충족 여부 | | |
|--|------|--|
| 심사항목 | 충족여부 | 충족 이유 |
| 1) 소극적 요건 | | |
| 가) 상법 제542조의8제2항 | 충족 | 법령 위반사항 없음 |
| 나) 「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6조 | 충족 | 법령 위반사항 없음 |
| 2) 적극적 요건 | | |
| 가) 당사 정관 제30조 제1항(전문성) | 충족 | 법률 분야 전문가 (現 성균관대 법대 교수/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등) |
| 나)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 (직무공정성) | 충족 |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|
| 다) 당사 정관 제30조 제3항 (윤리책임성) | 충족 |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|
| 라) 당사 정관 제30조 제1항(충실성) | 충족 |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|
| 사.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| | |
| 1) 회사등과 관계 | | 해당사항 없음 |
| 2) 적극적 요건 충족 | | 적극적 요건 충족함 |
| 3) 현재 겸직 업무 | | 겸직사항 없음 |
| 아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결과 | | |
| 재적위원 3명 중 2명 찬성으로 가결(박평조 위원, 임영진 위원) | | |
| -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, 본인 추천 안건 등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재적위원 불산입 | | |

자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: <별첨>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

차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: <별첨>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

3. 이성한

| | |
|--|--|
| 가. 후보자의 인적사항 | |
| ① 출생연도 : 1957년 | |
| ② 출신학교 :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-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- 중앙대학교 국제학 박사 | |
| 나. 후보자 경력 | |
|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 前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前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총괄기획국 국장 前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 前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과장 | |
| 다. 당사 사외이사 경력 | |
| 근무기간 : 2016년3월23일~현재 | |
| 라. 후보제안자 : 박평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) | |
| 1) 인적사항 | 現 미마츠기업 대표이사 사장 |
| 2) 후보자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3) 추천 이유 | 재정기획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과장,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/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,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 및 경제 분야에서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|
| 마. 회사등과 관계 | |
| 1)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2) 대주주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3) 임원과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
| 바. 자격충족 여부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심사항목 | 충족여부 | 충족 이유 |
| 1) 소극적 요건 | | |
| 가) 상법 제542조의8제2항 | 충족 | 법령 위반사항 없음 |
| 나) 「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6조 | 충족 | 법령 위반사항 없음 |
| 2) 적극적 요건 | | |
| 가) 당사 정관 제30조 제1항(전문성) | 충족 | 금융/경제 분야 전문가 (前 국제금융센터 원장/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 등) |
| 나)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 (직무공정성) | 충족 |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|
| 다) 당사 정관 제30조 제3항 (윤리책임성) | 충족 |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|
| 라) 당사 정관 제30조 제1항(충실성) | 충족 |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|
| 사.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| | |
| 1) 회사등과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 |
| 2) 적극적 요건 충족 | 적극적 요건 충족함 | |
| 3) 현재 겸직 업무 |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 겸직 중 | |
| 아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결과 | | |
| 재적위원 3명 중 3명 찬성으로 가결(박평조 위원장, 성재호 위원, 임영진 위원) | | |

자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: <별첨>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

차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: <별첨>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

4. 김성렬

| | |
|--|--|
| 가. 후보자의 인적사항 | |
| ① 출생연도 : 1958년 | |
| ② 출신학교 :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-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| |
| 나. 후보자 경력 | |
| 前 행정자치부 차관 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 前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실장 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 前 행정안전부 조직실 실장 | |
| 다. 당사 사외이사 경력 | |
| 근무기간 : - | |
| 라. 후보제안자 : 박평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) | |
| 1) 인적사항 | 現 미마츠기업 대표이사 사장 |
| 2) 후보자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3) 추천 이유 | 행정자치부 차관, 지방행정실 실장, 창조정부조직실 실장,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 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|
| 마. 회사등과 관계 | |
| 1)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2) 대주주와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| 3) 임원과의 관계 | 해당사항 없음 |

| 바. 자격충족 여부 | | |
|---|------|--|
| 심사항목 | 충족여부 | 충족 이유 |
| 1) 소극적 요건 | | |
| 가) 상법 제542조의8제2항 | 충족 | 법령 위반사항 없음 |
| 나) 「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6조 | 충족 | 법령 위반사항 없음 |
| 2) 적극적 요건 | | |
| 가) 당사 정관 제30조 제1항(전문성) | 충족 | 경영 분야 전문가 (前행정자치부 차관,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) |
| 나)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 (직무공정성) | 충족 |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 |
| 다) 당사 정관 제30조 제3항 (윤리책임성) | 충족 |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소유 |
| 라) 당사 정관 제30조 제1항(충실성) | 충족 | 부적격 사항 없음 |
| 사.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| | |
| 1) 회사등과 관계 | | 해당사항 없음 |
| 2) 적극적 요건 충족 | | 적극적 요건 충족함 |
| 3) 현재 겸직 업무 | | 해당사항 없음 |
| 아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결과 | | |
| 재적위원 3명 중 3명 찬성으로 가결(박평조 위원장, 성재호 위원, 임영진 위원) | | |

자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: <별첨>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

차.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: <별첨> 사외이사후보자 자격요건검토보고서 참조

선임대상 사외이사 후보 검토 보고서

| 성 명 | 종합 의견 |
|-------|-------|
| 박 평 조 | 적 합 |
| 성 재 호 | 적 합 |
| 이 성 한 | 적 합 |
| 김 성 렬 | 적 합 |

본 위원회는 상기 선임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.

2018년 2월 21일

신한카드 주식회사
임원후보추천위원회

위원장 박 평 조



| | | |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
| 후보자 | 박 평 조 | 소속법인 | 미마츠 기업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

※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

| | |
|---|---------|
| 상법 제332조 제2항 - 주식회사사외이사 결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-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금융지주회사법 제33조 제1항, 제2항 -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-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1항 - 적극적 자격요건 | 충족 |
|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2항 - 사외이사 결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
※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

|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| 해당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임원과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
| 소극적 자격요건 (주요 사항) | 해당여부 | 비 고 |
|--|------|---------|
| 소속 법인 자본의 10% 초과여신거래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, 집행임원, 감사 겸직 여부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, 비상임이사, 비상임 감사 겸직 여부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다른 회사(자회사 등 제외)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
| 적극적 자격요건 | 충족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성 | 충족 | - 경영전문가 (미마츠기업(일본) 사장) |
| 직무공정성, 윤리책임성, 충실성 | 충족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| 전문성(5등급), 직무공정성(5), 윤리책임성(5), 충실성(5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※ 평가 등급 : 5등급(4.5~5.0) - 매우 우수 / 4등급(3.5~4.5) - 우수 / 3등급(2.5~3.5) - 보통 / 2등급(1.5~2.5) - 부진 / 1등급(0~1.5) - 매우부진

| | | |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
| 후보자 | 성 재 호 | 소속법인 | 성균관대학교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

※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

| | |
|--|---------|
| 상법 제382조 제2항 - 주식회사사외이사 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- 상장회사사외이사 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금융지주회사법 제88조 제1항, 제2항 - 금융지주회사임원의 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1항 - 금융지주회사사외이사 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1항 - 적극적 자격요건 | 충족 |
|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2항 - 사외이사 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
※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

|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| 해당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임원과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
| 소극적 자격요건 (주요 사항) | 해당여부 | 비 고 |
|---|------|---------|
| 소속 법인 자본의 10% 초과여신거래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, 집행임원, 감사 겸직 여부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, 비상임이사,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다른 회사(자회사 등 제외)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
| 적극적 자격요건 | 충족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성 | 충족 | - 법률 전문가 (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 |
| 직무공정성, 윤리책임성, 충실성 | 충족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| 전문성(5등급), 직무공정성(5), 윤리책임성(5), 충실성(5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※ 평가 등급 : 5등급(4.5~5.0) - 매우 우수 / 4등급(3.5~4.5) - 우수 / 3등급(2.5~3.5) - 보통 / 2등급(1.5~2.5) - 부진 / 1등급(0~1.5) - 매우부진

| | | | |
|-----|-----|------|---|
| 후보자 | 이성한 | 소속법인 | - |
|-----|-----|------|---|

※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등 준수 여부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상법제542조의8제2항-상장회사사외이사결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법률」제5조-임원의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법률」제6조-사외이사의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당사정관제30조-사외이사의자격요건-적극적자격요건 | 충족 |

※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

|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| 해당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임원과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
| 소극적 자격요건(주요사항) | 해당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금고 이상의 실형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등의 취소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임직원 제재조치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
| 적극적 자격요건 | 충족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전문성 | 충족 | - 금융, 경제 전문가 (기획재정부 본부장, 국제금융센터 원장) |
| 직무공정성, 윤리책임성, 충실성 | 충족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| 전문성(5등급), 직무공정성(5), 윤리책임성(5), 충실성(5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※ 평가 등급 : 5등급(4.5~5.0) - 매우 우수 / 4등급(3.5~4.5) - 우수 / 3등급(2.5~3.5) - 보통 / 2등급(1.5~2.5) - 부진 / 1등급(0~1.5) - 매우부진

| | | | |
|-----|-----|------|---|
| 후보자 | 김성렬 | 소속법인 | - |
|-----|-----|------|---|

※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등 준수 여부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상법제542조의8제2항-상장회사사외이사결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」제5조-임원의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「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」제6조-사외이사의자격요건 | 해당사항 없음 |
| 당사정관제30조-사외이사의자격요건-적극적자격요건 | 충족 |

※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

|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| 해당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임원과의 관계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
| 소극적 자격요건(주요사항) | 해당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금고 이상의 실형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등의 취소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| 임직원 제재조치 | 미해당 | 특이사항 없음 |

| 적극적 자격요건 | 충족여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성 | 충족 | - 경영 전문가 (행정자치부 차관, 경기도 행정1부지사) |
| 직무공정성, 윤리책임성, 충실성 | 충족 |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| - |
|------------------|---|